

예 산 총 칙

2009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09,531,716	9,285,951
일반회계	278,789,481	8,363,684
특별회계	30,742,235	922,267
기타특별회계	30,742,235	922,267
상수도특별회계	11,338,628	340,159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53,347	22,60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617,937	48,538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519,323	15,580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16,086,810	482,604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400,670	12,020
기반시설특별회계	25,520	766

제 2 조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2009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3,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회반계 예비비는 4,303,961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다음 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 할 수 있다.

1.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2. 직무수행경비
3. 법정 의무부담금(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연금지급금, 공익근무요원보상금)
4.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